국 무 조 정 실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02)734-8791~2 / 전송(02)733-6634
규제개혁조정관실 규제개혁3심의관 과장 류충렬 사무관 김종문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436
시행일자 '99. 12. 7.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규제개혁담당관

보존기간	5 년	국무조정실장	국 무 총 리
공개여부	공 개		
조정관			
심의관	추결	기획심의관 :	
과 장			
기안자	김종문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12. 7	

제 목 규제개혁 후속조치 철저이행등 지시 (국무총리지시 1999-31호)

1.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등에 의거 제4차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99.11.15~23)한 바, 개선·폐지된 규제의 종전규제를 집행하는 사례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폐지규제를 집행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법령미근거 규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음

2. 금번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면서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시정 및 재발방지 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아 래 -

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가)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를 엄격히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교육자료 등 시달하면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불가피하게 지침, 교육자료 등을 시달할 경우에도 규제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히 검토하여 법령의 근거를 일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계 속 /

(나)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점검·지도할 것

○ 지난 2년간 규제개혁의 결과로 변경된 내용이 많은 바,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개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집행기관의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람

나. 금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가) 금번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 책임하에 시정조치하고,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적사례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라며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토록 할 것

(다) 위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처리계획)를 2000.1.15까지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기 바람

붙 임 :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결과(4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13-21, 31-47, 53-55, 57-67)

4次 規制改革 履行實態 點檢結果 報告(要約)

□ 제4차 規制改革 履行實態 點檢 結果를 報告 드림

- ㅇ '99.11.15~23(9일간) 4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실시
- ㅇ 點檢 對象 : 36개 기관
  - 광주시등 4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북 청도군등 12개 기초자치단체
  - 지역별 경찰청(서), 세관, 소방서 등 20개 기관

Ⅰ. 點檢結果

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속적인 점검 및 전파의 효과로 규제개혁 추진의지 및 노력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규제개혁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ㅇ 세관, 경찰서 등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향후 특별지방행정관청(경찰청, 세관, 교육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

ㅇ 폐지·개선된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숙지하고, 개선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아직도 규제개혁 사항을 잘 모르고 종전규제를 집행하는 현상 잔존

- 폐지·개선된 규제를 종전대로 집행한 사례에 대한 지적 건 수 감소 (1차 : 13개 기관 27건/2차 : 15개기관 27건/3차 : 21개기관 38건/4차 : 36개기관 28건)

ㅇ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하는 사례와, 법령에 근거없이 과다서류를 징구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지적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ㅇ 4차점검 유형별 지적건수

유형	폐지·개선된 규제운영	법령미근거 규제운영	법령미근거 과다서류 징구	조례정비등 후속조치 지연	기타
건수(86)	26	9	41	5	5

< 주요 수범사례 >

▲규제개혁 집행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령 및 소관분야의 규제개혁내용에 대하여 주·객관식 시험을 통해 업무숙지도를 평가하는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노력(울산)

< 주요 부진사례 >

▲ 다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건축법상 피난, 구조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없이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개선)되었으나 개정전과 같이 신고수리(광주서구)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부관으로 부대시설 운영의 지역주민우선, 종사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도내 생산물 우선사용 등의 규제를 부과(강원도)

▲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면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야도, 토지대장과 법령에 근거없는 건물배치도, 지적도, 구적도 등을 징구(경북 경주시)

Ⅱ. 措置計劃

ㅇ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함은 물론 엄정한 관계자 문책 및 교육등을 통해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공무원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토록 함

⇒ **금번 점검결과에 따른 조속한 시정·보완조치를 『국무총리지시』로 시달할 계획임**

※ 점검결과를 '99.12월중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規制改革 履行實態 點檢結果(4次)

'99. 12

規制改革委員會
(國 務 調 整 室)

- 목 차 -

Ⅰ. 點檢槪要 1

Ⅱ. 點檢結果 2

Ⅲ. 分野別 點檢結果 4

□ 주요 점검항목별 결과

○ 폐지·개선된 규제 운영실태

○ 법령미근거 규제 운영실태

○ 하위법령정비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

□ 역학조사결과

Ⅳ. 措置計劃 9

< 첨 부 >

□ 기관별 지적사례 및 조치사항

□ 유형별 지적사례

Ⅰ. 點檢槪要

□ 개요

○ 규제개혁에 따른 집행기관등의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독려·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을 실시(제4차)

○ 점검일시 : 99.11.15~11.23 (9일간)

○ 점검기관 : 지방자치단체(16), 기타행정기관(20) 등 총36개 기관

- 광주광역시(동구,서구,광산구),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강원도(춘천시,인제군,고성군), 경상북도(경주시,포항시,청도군)
- 지방경찰청(울산,강원,경북,전남) 및 경찰서, 지방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관(광주,울산,동해,포항)

*** 99년중 점검 : 99.4월(중앙 및 지자체), 99.7월(지자체) , 99.9월(중앙 및 지자체)**

□ 重點 點檢事項

○ 후속조치·집행실태

-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의지
- 폐지·개선된 규제의 집행실태
- 법령미근거 규제 운영여부
- 하위법령 정비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旣지적·전파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여부 등

○ 주요 규제개혁 사항에 대한 역학조사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법령을 선정하여 규제개혁후 법령, 조례개정에서부터 실제 집행상황 등 전과정을 점검하고 집행후 문제점 및 보완필요여부를 조사

Ⅱ. 點檢結果

□ 점검결과 총평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속적인 점검 및 전파의 효과로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의지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규제개혁 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 세관, 경찰서 등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 향후 특별지방행정관청(경찰청, 세관, 교육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필요

<주요수범사례>

▲ 규제개혁 집행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령 및 소관분야의 규제개혁내용에 대하여 주·객관식 시험을 통해 업무숙지도를 평가하는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노력(울산)

▲ 시군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2회)하여 우수시·군에는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고, 부진한 시군에는 기관경고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노력(경북)

○ 폐지·개선된 규제에 대해 대부분 잘 숙지하고, 개선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었으나 일부의 경우 아직도 규제개혁 사항을 잘 모르고 종전 규제를 집행하는 현상 잔존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여전히 지적되는등 전반적으로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법령에 근거없이 과다서류를 징구하는 사례도 계속하여 지적

< 사례 >

▲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관만으로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오리등 가금류의 도살을 금지하는 규제부과(울산 울주군)

▲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업무지침 등으로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고시, 훈령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관세청 임차보세운송허용에따른업무처리지침의 일부 규정 등)

○ 규제개혁 관련 개정법령 홍보 및 교육등 후속조치는 대체로 원만히 추진중이나 조례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등의 절차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사례 >

▲ 분뇨관련영업을 받고자 할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중 수수료 인상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1년여동안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울산 울주군)

○ 건축법등 10개 법령 규제개혁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 및 실제 집행과정과 집행후 문제점등 전과정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방법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적사항 : 36개기관 86건 지적

< 기관별 >

○ 광역자치단체 : 13건

기 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건 수	4	2	3	4

○ 기초자치단체 : 52건

기관	광주동구	광주서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울산북구	울산울주군
건수	3	5	1	5	2	4
기관	강원춘천시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경북경주시	경북포항시	경북청도군
건수	7	4	3	7	8	3

○ 특별지방행정관청 등 : 16건

세관	소계	광주세관	울산세관	동해세관	포항세관
건수	3	1	1	1	-
경찰	소계	전남지방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
건수	11	2	3	3	3
소방	소계	광주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소방본부, 남부소방서	강원소방본부, 춘천소방서	경북소방본부, 소방서
건수	2	-	1	-	1

○ 기타(중앙행정기관 지적) : 5건

< 유형별 >

유형	폐지된 규제 계속 운영	법령미근거규제 운 용	법령미근거 과다서류 징구	조례정비등 후속조치 지연	기타
건수 (86건)	26	9	41	5	5

※ 기관별, 유형별 세부 지적내용 별첨

Ⅲ. 分野別 點檢結果

□ 후속조치 및 집행실태 점검

1.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 집행실태

○ 지난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파가 잘 이루어져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지·개선된 규제에 대해서도 지적건 수가 많이 줄었으나 종래 규정 집행현상은 시정되지 못하고 있음

1차	2차	3차	4차(금회)
13개기관 17건	15개기관 27건	21개기관 38건	36개기관 26건

【 주요지적사례 】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99.2.8)되었음에도 99.7.14 사업계획승인 신청전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사전심의(울산광역시)

◆ 건축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피난,구조기준이 약한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없이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개선되었으나 99.11.11 다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시 신고할 필요가 없음에도 개정되기 전과 같이 신고수리(광주 서구)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제도가 폐지(99.8.6)되었음에도 99.10.22 선해임신고를 받음(포항소방서)

◆ 자동차등록말소 신청처리를 함에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7호 서식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가 99.5.23 개정되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 증명서류'등이 폐지되었으나 개정전 규정대로 동서류를 징구(강원 춘천시)

2. 법령미근거 규제운영

○ 행정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불필요한 서류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근거없이 징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지적됨

【 주요지적사례 】

◆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시 법령에 근거없는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징구(광주광역시)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수질 보전을 위해 법령에 근거없이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오리등 가금류의 도살행위를 금지(울산 울주군)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부대시설 운영의 지역주민 우선, 종사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도내 생산물 우선사용 등의 규제를 부과(강원도)

◆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야도, 토지대장과 법령에 근거없는 건물배치도, 지적도, 구적도 등을 징구(경북 경주시)

3. 규제개혁 후속조치 이행실태 등

○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등 하위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야 하나

- 조례준칙 시달지연, 지방의회 의사일정, 통합조례 제정 등을 이유로 정비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

【 주요지적사례 】

◆ 99.2.6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99.3.15 행자부에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표준안 미시달 등을 이유로 개정이 지연되다, 99.11.4에야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 현재 계류중(광주광역시)

◆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의 관내에 주소를 둔자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타지역점검에서 법령미근거 규제로 지적되어 이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하나 99.11.16 현재까지 관련 조례에 동규정을 존치(울산 남구)

◆ 99.3.31 농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농지임차료상한규정등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인 춘천시농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가 99.11.15에야 자체심사의뢰 되는등 정비 지연(강원 춘천시)

4. 기타

○ 집행기관 점검시 상위 규정·지침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 문광부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중 일부규정
- 관세청 : 임차보세운송허용에따른업무처리지침 등

【 주요지적사례 】

◆ 법령등에 근거가 없음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공문에 근거하여 문광부가 노래연습장 등록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한 후 등록토록 지시하여 울산광역시를 비롯 집행기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등록시 동 확인서를 첨부토록 함

⇒ 문광부 시정조치 또는 근거마련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문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지침으로 제정·시행하여 지방에서는 게임제공업소의 영업기준 및 벌칙·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동 기준은 단순한 유권해석의 수준을 넘어 전국 게임업소의 영업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명문화 되어야할 사항 ⇒ 문광부 시정조치 또는 근거마련

◆ 법령등에 근거없이 '임차보세운송허용에따른업무처리지침'으로 보세운송업자가 자기보유차량외의 차량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시는 운송인 실명제 및 세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함으로써 울산세관에서 99.4.1 이후 현재까지 5건의 보세운송차량 임차승인신청을 받아 처리 ⇒ 관세청 시정조치 또는 근거마련

◆ 경찰청 내부지침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으로 도로고통법령상의 근거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전문학원의 강사에 대한 선해임신고를 받도록 규정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이를 신고받는 등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내용 다수 포함 ⇒ 경찰청 시정조치 또는 근거마련

□ 역학조사 결과(10개법령)

법률	법령개정실태	후속조례,규칙 등 개정실태	집행실태	문제점 및 보완책
건축법	개정완료	일부개정완료,일부 개정중	일부 집행실태미흡	-
소방법	개정완료	개정완료	일부 집행실태미흡	일부 보완필요
공중위생관리법	법은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규칙 미제정	-	공중위생법상 폐지·개선규제 적절히 집행	조속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미개정	개정완료	적절히 집행	-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개정완료	-	적절히 집행	일부 보완필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미개정	-	적절히 집행	-
오수분뇨및축사 폐수처리에관한 법률	개정완료	일부개정완료, 일부개정중	일부 집행실태미흡	일부 보완필요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	적절히 집행	-
농지법	개정완료	-	일부 집행실태미흡	일부 보완필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완료	개정완료	적절히 집행	-

※ 법령별 세부역학조사 결과 별첨

Ⅳ. 措置計劃

□ 廢止된 規制 繼續運用 및 法令未根據 規制 中斷措置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용 중단토록 조치하고, 향후 폐지된 규제를 재차 운용할 경우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리도록 함

○ 법령미근거 규제는 각 기관장 책임하에 즉시 운용 중단시키고, 부득이 계속 존치시킬 규제도 일단 운용중단후 규제영향 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법령에 근거 마련토록 조치

○ 지적된 사례를 각 지자체에 통보, 유사사례를 자체정비토록 촉구

□ 機關別 規制改革 推進의 實質化 促求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특히 집행기관의 업무지침이 되는 고시·예규등 자체법규의 규제심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규제개혁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

※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교육 및 순회강연 필요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 및 규제업무가 실제로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사전달과 교육을 촉구

□ 主要 指摘事例에 대한 關聯者 問責

○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종전대로 계속 운영한 사례중 공직자의 잘못이 큰 사례, 지적사항중 민원불편을 크게 초래한 사례, 명백한 법령위반사례는 관련자 징계 등 문책

⇒ 금번 점검결과에 따른 조속한 시정·보완조치를 「국무총리지시」로 시달할 계획임

유 형 별 지 적 사 례

1. 폐지·개선된 규제 종전대로 운용사례(26)

내 용	관련기관
○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의무제도가 폐지되고 자율고용제도로 전환(99.2.2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관리자 해임신고(99.6.1, 6.8)를 수리	광주
○ 출판사 및 인쇄소의 폐업신고가 '99.1.21폐지되었으나 도서출판 무등방의 폐업신고 수리(99.5.12)	광주 동구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개시신고가 폐지(99.8.9) 되었음에도 (주)코리아 밀라노의 영업개시 신고 수리('99.10.22)	〃
○ 비디오물대여업 등록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폐업신고를 할 필요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반환조치하면 됨에도 등록증 반납외에 별도로 임의의 폐업신고서 양식을 만들어 작성·제출받음	광주 서구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이미 폐지('99.2.5)된 사업개시의무등을 석유사업법 12조에 근거하여 판매업 등록의 부관으로 부과(99.6.14)	〃
○ 다방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신고 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건축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5개 시설군중에서 피난·구조기준이 약한시설군에서 강한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없이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 신고수리(99.11.11)	〃

내 용	관련기관
ㅇ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99.2.8) 되었음에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전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사전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99.8.4)	울산
ㅇ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한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99.1.25)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5일만에 처리하는 등 개선전의 규정대로 처리(99.4.9)	울산 남구
ㅇ 석유사업법상 사업개시 신고가 폐지(99.2.25) 되었음에도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처리하면서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신고하도록 안내(99.6.5)하고,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주유소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유소 등록요건중 저장시설, 주유기의 자기소유 요건이 폐지(99.3.24)되었음에도 주유소 등록수리시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기 보유계획서를 징구(99.6.5)	〃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6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폐지신고제가 폐지(99.7.1)되었음에도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폐지신고를 수리(99.8.26)	울산 북구
ㅇ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시 전기안전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8의 전기용품종류등이 개정('99.4.13)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내용으로 단속계획을 수립, 실시	강원 춘천시 강원 인제군
ㅇ 자동차등록말소신청처리를 함에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17호 서식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 증명서류'가 폐지(99.5.23) 되었음에도 개정전 규정에 의한 양식을 계속 비치·사용하여 동서류 징구	강원 춘천시
ㅇ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 신고대상중 대표자변경신고가 폐지('99.1.25) 되었음에도 '99.3.10 신고수리(99.3.10)	강원 인제군

내 용	관련기관
ㅇ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및 령제7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사항중 소재지등은 변경신고가 폐지(99.3.12)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수리(99.6.22)	경북 청도군
ㅇ 건축공사현장의 건축허가 표지판 부착의무가 폐지(99.4.30) 되었음에도 건축허가 부관으로 부착 의무를 부여	경북 청도군, 경북 포항시
ㅇ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은 5톤이상일 경우 착공일전일까지 배출자신고하도록 개정(99.8.9) 되었음에도 개정전의 규정인 "건설폐기물 1톤이상 배출시 공사착공 7일전까지 배출자 신고"하도록 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99.8.23)	경북 청도군
ㅇ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등록시 본거지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인하도록 개선(99.2.19) 되었음에도 이전 규정대로 주민등록등본을 관례적으로 계속 징구(50건)	경북 경주시
ㅇ 온천법시행령 제13조 개정으로 동력장치착수, 중지, 재개 또는 완공하거나 폐공할 때 신고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폐공신고서, 온천이용허가증 사본, 공사사진등을 첨부하여 신고처리(경주, 99.7.2), 동력장치 설치완료 신고수리(포항, 99.8.16)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
ㅇ 건설업자 변경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경력, 임원 등) 신고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폐지(99.4.15)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수리(99.11.9)	경북 포항시
ㅇ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시 제출하는 배출시설 부합여부 확인제도가 폐지(99.8.9)되었음에도 이의 부합여부를 확인후 신고처리(99.9.10)	〃
ㅇ 낚시어선법이 개정되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지정, 낚시 어선업자의 출입 신고의무, 안전 교육이수의무등이 폐지(99.2.5) 되었음에도 낚시어선업 신고를 처리하면서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부여(99.3.8)	〃
ㅇ 소방법개정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제도가 폐지(99.8.6)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수리(99.10.22)	포항소방서
ㅇ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거 자동차전문학원의 지정신청민원 제출서류중 종전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던 것을 주민등록증사본으로 대체토록 개정되었음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징구	강원지방경찰청

2. 법령미근거규제 운용(9)

내 용	관련기관
ㅇ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전용게임장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비서류중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협회의 확인(직인)을 받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등록증 영업장내 게첨」 의무를 부과	광주 서구
ㅇ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조건으로 "하천수질 보전을 이유로 오리, 닭등 가금류의 접객업소내 도축행위를 금지"토록 조치 * 「도계육 유통지역 고시」상 닭은 도살금지에 근거가 있으나 오리등 가금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울산 울주군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하여야 하며, 건진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검진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 북구관내 8개동의 경우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진을 의뢰하게 하고 그 검진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장애인 수첩을 발급함으로써 민원불편 초래	울산 북구
ㅇ 관광진흥법 제4조등에 의거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서 법령등에 근거없이 부대시설운영의 지역주민우선권, 종사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도내생산물 우선사용'등의 규제를 사업승인조건으로 부과	강원도
ㅇ 석유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고시한 '강원도석유판매업등록요건에관한고시' 중 제6조제3항의 "유종변경"을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등록조건으로 포함하여 고시	강원 춘천시
ㅇ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규정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수면어업허가 허가조건에 "공공사업시행으로 본허가 구역축소 및 허가취소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별도로 동허가조건에 관한 내용을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서를 발부받아 첨부토록 하고(경주) - "공공사업으로 허가를 취소하여도 소멸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등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였으면서 별도로 동 내용을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부한 인증서를 제출토록 함(포항)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

내 용	관련기관
ㅇ 총포등 소지허가는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제21조에 의거 신청자 신체검사서, 총포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받아 허가상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범죄사실조회)를 확인 허가하도록(기속행위) 규정되어 있음에도 99.1.1일부터 점검일까지 130여건의 총포소지허가를 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신청인의 주소지에 출장 본적, 직업, 학력, 교우관계, 재산관계, 정당관계, 사상관계 등 허가와 관련되지 않은 10여개 항목을 조사확인후 처리	경주경찰서
ㅇ 법령미근거 규제운용 - 보세운송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제98-76호('98.12.11)) 제2-1-4조 및 2-1-5조에 의거하여 보세운송사업자들의 등록(갱신)은 관세협회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등록상실의 경우와 등록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 대한 어떠한 조치근거가 없음에도 '99.7.8, 유한회사 유창의 상호변경 및 대표변경건등 2건의 신고를 받아 관세협회에서 이를 수리하고 세관에 통보를 해주는 등 법령미근거 규제를 운영	광주세관

3. 법령미근거 과다서류 징구(41)

내 용	관련기관
○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법정서류이외의 법인등기부사본·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사본을 징구(99.7.7)	광주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법정서류가 아니고 공부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 등을 징구	〃
○ 자동차 등록말소처리과정에서 말소등록세 및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징구(99.6.3)	광주 동구
○ 농지 전용협의 신청시 법령등의 구비서류가 아니고 공부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 임야도, 지적도 등을 비롯 법정서류가 아닌 건물배치도,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징구	광주 서구 경북 경주시
○ 공연법 제4조등에 의한 공연신고 처리시 영화상영등급 분류결정서·영화업신고증·공연자등록증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징구(99.9.14)	광주 광산구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에 의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원명단, 수질측정대행업등록증, 사무실 및 실험실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징구(99.9.3, 9.21)	울산
○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법령등에 근거없이 노래주점 허가시 서약서를 징구(99.9)	울산 남구
○ 건축착공 신고수리시 법령등에 근거가 없는 설계사면허증, 설계업등록증, 원인자부담금 영수증사본, 지질조사보고서 등의 과다서류를 징구(99.10.27)	울산 남구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신청을 접수처리 함에 있어 법령상 근거서류가 아니며 아울러 자체 공부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등본을 2회에 걸쳐(99.8.9, 8.17)제출토록 민원을 보완요구(울주) - 법령등에 근거없는 종사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징구(춘천)	울산 울주군 강원 춘천시
○ 소규모 건축물 증개축 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필요성 여부를 떠나 관례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구비서류로 징구	울산 울주군

내 용	관련기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또는 56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변경허가, 동법 제80조 또는 제81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변경신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등에 근거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종사원현황,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였으며 - 1999.9.1 대우위생의 변경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비서류중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삭제(1999.8.9)되었음에도 개선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구서식을 사용	울산 울주군
○ 건축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건축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건축사무소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등 규정외 서류 징구	강원도
○ 자연공원법 제22조에 의거 공원사업 시행허가 첨부서류 관련 자체확인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등의 서류를 징구	〃
○ 농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등에 근거하지 않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잔여농지성실경작확인서등을 징구	강원 춘천시
○ 골재채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골채채취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서등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징구	강원 춘천시
○ 산림법 제1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허가대상사진, 계획평면도 등의 서류를 징구	강원 인제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등 규정외의 서류 징구	〃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동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신규등록업무 3건 처리시 법령등에 미근거한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본을 징구	강원 고성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6조의 사업개시신고 폐지('99.2.8)에 따른 확인출장중 완성검사필증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가입영수증 사본등 법령미근거 서류를 징구	〃

내 용	관련기관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면서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는 자체확인 또는 등록증에 의한 확인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자동차 등록완료 보고서를 징구	경상북도
ㅇ 213건의 건설업 면허를 인가하면서 인가조건인 자본금 5억원 이상을 확인을 이유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징구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외에도 공인회계사의 기업재무진단서를 관례적으로 징구	〃
ㅇ 먹는물관리법제1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수처리제 제조업등록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령에 근거없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첨부서류를 징구	〃
ㅇ 식용가공업허가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법령등에 근거없는 정관,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첨부서류 징구	〃
ㅇ 골재 채취허가를 하면서 법령등에 근거없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징구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
ㅇ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면서 법령등에 근거없는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첨부서류 징구	경북경주시
ㅇ 토지형질변경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등에 근거없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각서 등의 첨부서류를 징구	경북 포항시
ㅇ 소방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시 법령등에 근거없이 소방공사설계감리업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징구	울산 남부소방서
ㅇ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경비업 허가 신청을 처리 하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건축물대장, 경비원 교육시설확보계획서, 경비원교육장 시설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징구	전남, 강원, 경북 지방경찰서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한 도로공사 신고서외에는 구비서류를 징구할 필요가 없으나 법령등에 근거없이 착공계·위치도·안전시설설치도 등을 징구	광주 북부경찰서

내 용	관련기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자동차 지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등에 근거가 없고 자체공부 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등을 비롯 자동차등록증, 사업용차량인수인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 신청차량 사진 등을 징구	울산 지방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신고 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공사시공계획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징구	남부경찰서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에 의거 분사기소지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등에 근거없이 교육수료증서(자체확인 가능한 서류)를 징구하였고, 동법 제12조에 의거 공기총 소지허가업무를 처리(1999.7.8)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재학증명서, 각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징구	울산 남부경찰서, 강원 고성경찰서, 경북 경주경찰서
○ 관세법 제5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거 항만운송사업등에 관한 영업등록(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등에 규정된 구비서류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직원명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징구	울산세관
○ 부두하역등의 영업등록(변경)신청시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및 자체확인가능한 영업등록증사본을 징구	동해세관

4.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미흡(5)

내 용	관련기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지연 - '99.2.6,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99.3.15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부처 규제개혁에 따른 법령개정사항을 일괄통보하여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 미시달 등을 이유로 개정이 지연되다, '99.7.26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11.4에야 시의회에 동조례개정안을 제출	광주
○ 법령에 근거없이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타지역점검에서 법령미근거 규제로 지적되어 이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하나 99.11.16 현재까지 "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에 동규정을 존치	울산 남구
○ '99.3.31 농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농지임차료상한규정등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인 춘천시농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가 '99.11.15에야 자체심사의뢰가 되는등 점검일 현재 미정비	강원 춘천시
○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고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를 즉시 정비하여야 하나 점검일 현재 미정비	강원 고성군
○ 규제정비법령은 조속히 정비하여야 함에도 경주시 정비대상 조례, 규칙 40개중 경주시 건축조례등 14개 조례 규칙은 99.11까지 개정완료치 못하고 부진	경북 경주시

5. 기 타(5) : 중앙행정기관 지적

내 용	관련기관
ㅇ 문광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공문에 근거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울산광역시에 노래연습장 등록신청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된 후 등록해 주도록 노래연습장 등록시 동 확인서를 첨부케 함	문광부
ㅇ 법령미근거 지침운영 - 음비게임법시행규칙상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게임업소는 문구류, 완구류, 캐릭터 상품류, 액서사리류로서 통상의 기념품 범위를 넘지 않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공하는 경품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문광부 지침으로 제정·시행(99.10.25)하여 게임제공업소의 영업기준으로 적용하고 벌칙·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동 기준은 단순한 유권해석의 수준을 넘어 전국 게임업소의 영업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등에 의거 법령에 명문화 되어야 할 사항임. * 경품취급기준의 주요내용 - 경품가격(전체이용가 게임물 1만원, 18세 이용가 게임물 2만원 초과금지) - 경품으로 제공금지 물품 지정(의약품, 성적호기심 자극물, 코인, 전화카드, 복권 등) - 경품제공방법 규정(경품개수 1개 한정, 경품변경금지, 경품이 아닌 것 전시금지 등)	문광부
ㅇ 경찰청 내부지침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운영규칙(교통 63340-304, 98.3.5) 으로 도로교통법령상의 근거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전문학원의 강사에 대한 선·해임신고를 받도록 규정하여 일선경찰청에서 법령미근거 규제를 운영	경찰청
ㅇ 법령에 근거없이 "임차보세운송허용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달(관세청 화물 42730-166, 1999.3.25)함으로써 울산세관에서 1999.4.1 이후 1999.11.19 현재까지 총 5건의 보세운송차량 임차승인 신청을 처리	관세청
ㅇ 관세청 감시업무편람(99.2) 및 하역업자등의사무취급요령(예규3-1-11)에서 영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이력서, 임원명단을 징구토록 하고 있음	관세청